(略称) 韓国との社会保障協定

第九条	八	第七条	第六条	第五条	第四条	第三条	第二条	第一条	前文	目							
第王条から前条までの規定の何夕 七三七	外交官、領事官、公務員等		被用者及び自営業者に関する特別規定 七三六	適用法令に関する一般規定 七三五	待遇の平等 七三四	この協定の適用を受ける者 七三四	この協定の適用範囲 七三四	定義 七三三		次ページ	平成 十七年 四月 一日 効力発生	(条約第四号及び外務省告示第六九号)	平成 十七年 二月 二日 公布及び告示	平成 十七年 一月二十八日 東京で効力発生のための通告の公文の交換	平成 十七年 一月二十八日 効力発生のための通告の閣議決定	平成 十六年 六月 三日 国会承認	平成 十六年 二月 十七日 ソウルで署名

末文	第十八条	第十七条	第十六条	第十五条	第十四条	第十三条	第十二条	第十一条	第十条	
	有効期間及び終了 七四〇	効力発生 七四○	この協定の効力発生前の派遣期間等の起算点 七四〇	意見の相違の解決 七三九	使用言語 七三九	情報の秘密性 七三九	相互援助 七三八	この協定の実施に必要な行政上の措置等 七三八	随伴する配偶者及び子 七三八	

義

_

日本国及び大韓民国は、

社会保障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

社会保障の分野における両国間の関係を規律することを希望して、

次のとおり協定した。

第一条

1 この協定の適用上、

- いては、国籍法に定義された大韓民国国民をいう。 (国) 「国民」とは、日本国については、日本国の国籍に関する法律にいう日本国民をいい、大韓民国につ
- その他の国際約束の実施のために公布された法律及び規則を含めない。は、一方の締約国が第三国との間で締結した社会保障に関する条約その他の国際約束又はそれらの条約し、「法令」とは、次条に掲げる年金制度に関する一方の締約国の法律及び規則をいう。ただし、法令に
- (c) 「権限のある当局」とは、次条に掲げる年金制度を管轄する政府機関をいう。
- 機関(その連合組織を含む。)をいい、大韓民国については、国民年金管理公団をいう。()「実施機関」とは、日本国については、次条心に掲げる日本国の年金制度の実施に責任を有する保険
- 月三十一日の難民の地位に関する議定書第一条にいう難民をいう。(2) 「難民」とは、千九百五十一年七月二十八日の難民の地位に関する条約第一条又は千九百六十七年一

일본국과 대한민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일본국과 대한민국은,

사회보장분야에서 양국간의 관계를 규율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 1. 이 협정의 석용상
- 가 "국민"이라 학은 일본국에 있어서는 일본국의 국적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일본 국민을 말하고,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국적법에 정의된 대 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 나. "법령"이라 한은 이 협정 제2조에 규정된 연근제도에 관한 일방체약당 사국의 법률 및 규칙을 말한다. 다만, 법령은 일방체약당사국과 제3국 간에 체결한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 그 밖의 국제합의 또는 그러한 조약, 그 밖의 국제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공포된 법률 및 규칙을 포험하지 아니한다.
- 다.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이 협정 제2조에 규정된 연금제도를 관할하는 정부기관을 말한다.
- 라. "실무기관"이라 함은 일본국에 있어서는 이 협정 제2조나목에 규정된 일본국 연금제도의 실시를 책임지는 보험기관(그 연합조직을 포함한다) 을 말하고,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말한다.
- 마 "난민"이라 함은 1951년 7월 28일의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제1조 또는 1967년 1월 31일의 난민의지위에관한의정서 제1조에서 말하는 난민을 말한다.

2 この協定の適用上、この協定において定義されていない用語は、各々の締約国の法令において与えられ ている意味を有するものとする。

第二条

この協定は、次の年金制度について適用する。

- 大韓民国については、国民年金
- (b) 日本国については、
- (i) 専ら又は主として国庫を財源として支給されるものを除く。) 国民年金(老齢福祉年金その他の福祉的目的のため経過的又は補完的に支給される年金であって、
- (ii) 厚生年金保険
- (iii) 国家公務員共済年金
- 地方公務員等共済年金

(iv)

 (\mathbf{v}) 私立学校教職員共済年金

第三条

これらの者に由来する権利を有する家族及び遺族に適用する。 この協定は、いずれか一方の締約国の法令の適用を受けているか又は受けたことがあるすべての者並びに

受ける者 の適協定

第四条

等待遇の平

は、当該他方の締約国の法令の適用に際して、当該他方の締約国の国民に対して与えられる待遇と同等の にこれらの者に由来する権利を有する家族及び遺族であって、他方の締約国の領域内に通常居住するもの 待遇を受ける。 一方の締約国の法令の適用を受けているか又は受けたことがある当該一方の締約国の国民又は難民並び

> 법령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2. 이 협정의 적용상 이 협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각 체약당사국의

丛 2 KH

- 이 협정은 다음의 연금제도에 적용된다
-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
- 나. 일본국에 있어서는
- (1) 국민연금(노령복지연금 그 밖의 복지적 목적을 위하여 경과적 급되는 것을 제외한다) 완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으로 전적 또는 주로 국고를 재원으로 하여 지 나 H ΉI
- (2) 후생연금보험
- (3) 국기공무원공제연금
- (4) 지방공무원등 공제연금
- (5) 사립학교교직원공제연금

ယ K

당해자로부터 유래하는 권리를 가지는 가족 및 유족에게 적용된다. 이 협징은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 받고 있거나 받았던 모든 자와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 통상 거주하는 자는 당해 타방체약당사국의 법령 적 용에 있어서 당해 타방체약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받 국민 또는 난민과 당해사로부터 유래하는 권리를 가지는 가족 및 유족으로서 1.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 받고 있거나 받았던 당해 일방체약당사국

- 3 1の規定は、大韓民国の法令による返還一時金には適用しない。
- ては、当該地域に通常居住する当該一方の締約国の国民に対して支給する場合と同一の条件で支給する。4 一方の締約国の法令による給付は、両締約国の領域外の地域に通常居住する他方の締約国の国民に対し
- て定めた日本国の法令の規定に影響を及ぼすものではない。 で定めた日本国の法令の規定に影響を及ぼすものではない。 ただし、この規定は、初診日又は死亡日において六十歳以上六十五歳未満であった者に関して障害基い。 ただし、この規定は、初診日又は死亡日において六十歳以上六十五歳未満であった者に関して障害基い。 ただし、この規定は、初診日又は死亡日において六十歳以上六十五歳未満であった者に関して障害基い。 ただし、この規定は、初診日又は死亡日において六十歳以上六十五歳未満であった者に関して障害基い。 ただし、この規定に影響を及ぼすものではない。

第五条

- 2 強制加入に関しては、次条1及び3の規定に従うことを条件として、次に掲げる者に対して同一の期間 2 強制加入に関しては、次条1及び3の規定に従うことを条件として、次に掲げる者に対して同一の期間
- (a) 両締約国の領域内において被用者として就労する者

- 제1항의 규정은 일본국의 영역 밖에서 통상 거주하는 것에 의하여 일본 국민에 대하여 인정되는 합산대상기간에 관한 일본국 법령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한다.
- 제1항의 규정은 대한민국 법령에 의한 반환일시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4. 일빙제약당사국의 법령에 의한 급여는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의 지역에 통상 거주하는 타방체약당사국의 국민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에 통상 거주하는 당해 일방체약당사국의 국민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한다.
- 5.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 통상 거주할 것을 급여를 받을 권리의 취득 또는 급여의 지급을 위한 요건으로 정한 당해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 규정은 어 느 일방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난민과 당해자로부터 유래하는 권리를 가지는 가 족 및 유족으로서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 통상 거주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정은 초진일 또는 사망일에 있어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이 었던 자에 관하여 장애기초연금 또는 유족기초연금을 수급할 권리의 취득을 위하 여 일본국의 영역 안에 통상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정한 일본국의 법령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5 조

- 1. 제2조에 규정된 연금제도에의 강제가입(이하 "강제가입"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이 협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악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피용자 또는 자영자로서 근로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일방체악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 받는다.
- 강제가입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동일한 기간에 양 제약당사국의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자가 통상 거주하는 영역의 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 받는다.
 가.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피용자로서 근로하는 자

(b) 一方の締約国の領域内において被用者として就労し、かつ、他方の締約国の領域内において自営業者

用する。 新国の法令が適用されることとなる場合には、その者が通常居住する領域の属する締約国の法令のみを適約国の法令が適用されることとなる場合には、その者が通常居住する領域の属する締約国の決令のみを適

第六条

る特別別 が自営業 が用者及

雇用者により当該第三国の領域から他方の締約国の領域に派遣される場合にも適用される。 2 1の規定は、雇用者により一方の締約国の領域から第三国の領域に派遣されていた者が、その後、当該

3 強制加入に関しては、第二条に掲げる一方の締約国の領域内において就労しているものとみなして当該一方の締とを条件として、その者が当該一方の締約国の領域内において就労しているものとみなして当該一方の締約国の領域内においてのみ自営業者として就労の領域内において自営業者として就労まる者が、他方の締約国の領域内においてのみ自営業者として就労の領域内においてのみ自営業者として就労の領域内においてのみ自営業者として就労の領域内においてのみを適用する。

場合には、自国の法令の適用を免除する権限のある当局又は実施機関は、第九条の規定に従って、引き続4 1又は3の規定の適用に当たっては、これらの規定にいう派遣又は自営活動が五年を超えて継続される

나.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피용자로서 근로하고, 또한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자영자로서 근로하는 자

3. 강제가입에 관하여는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자영자로서 근로하는 자에 대하여 동일한 기간에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자가 통상 거주하는 영역의 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 받는다.

6 圣

1. 강제가입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제2조에 규정된 일방체약당사국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또한 당해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 사업장을 가진 사용자에게 고용된 자가 그 사용자에 의하여 당해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 근로하도록 피건되는 경우에는 그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고용된자가 당해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병만을 석용 받는다.

제1항의 규정은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제3국의 영역에 파견된 자가 그 후에 그 사용자에 의하여 당해 제3국의 영역에서 타방체약당시국의 영역에 파견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3. 강제가입에 관하여는 제2조에 규정된 일방체약당사국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또한 통상 당해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자영자로서 근로하던 자가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만 자영자로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당해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그 자영활동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자가 당해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 당해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 받는다.

4.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1항에서 말하는 파견 또는 제3항에서 말하는 자영활동이 5년을 조과하여 계속되는 경우에는 자국의 법령의

第七条

き自国の法令の適用を免除することができる。

のみを適用する。 対して両締約国の法令が適用されることとなる場合には、その者が通常居住する領域の属する締約国の法令対して両締約国の法令が適用されることとなる場合には、その者が通常居住する領域の属する締約国の法令協力の権利国の族を掲げる海上航行船舶において船員として就労する者に

第八条

四日の領事関係に関するウィーン条約の規定に影響を及ぼすものではない。 この協定は、千九百六十一年四月十八日の外交関係に関するウィーン条約又は千九百六十三年四月二十

第九条

ことについて相互に同意することができる。
にいずれか一方の締約国の法令が適用されることを条件として、第五条から前条までの規定の例外を認める営業者の申請に基づき、特定の者又は特定の範囲の者の利益のため、これらの特定の者又は特定の範囲の者選制加入に関しては、両締約国の権限のある当局又は実施機関は、被用者及び雇用者の共同の申請又は自強制加入に関しては、両締約国の権限のある当局又は実施機関は、被用者及び雇用者の共同の申請又は自

적용을 면제하는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자국의 법령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7 3

강제가입에 관하여는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해상항행 선박에 있어서 선원으로서 근로하는 자에 대하여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이 적용되는 것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자가 통상 거주하는 영역의 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 받는다.

--8 光

- 이 협정은 1961년 4월 18일의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또는 1963년 4월 24일의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 강제가입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일방제약당사국의 공무원 또는 일방제약당사국의 법령에서 공무원으로 취급되는 자가 타방제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근로하도록 파견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당해 일방제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 일방제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 받는다.

<u>제</u> 9 :

강제가입에 관하여는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특정한 자 또는 특정 범주의 자의 이익을 위하여 피용자 및 사용자의 공동 신청 또는 자 영자의 신청에 의하여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범령이 적용되는 것을 조진으로 당 해 특정한 자 또는 특정 범주의 자에게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상호 동의할 수 있다.

び 子 偶 者 及

第十条

当該配偶者又は子が別段の申出を行う場合を除き、日本国の法令は、適用しない。また、当該配偶者又は により大韓民国の法令の適用を受けるものに随伴する配偶者又は子が日本国民以外の者である場合には、 子が日本国民である場合には、日本国の法令の適用の免除は、日本国の法令に従って決定する。 強制加入に関しては、日本国の領域内において就労する者であって、第六条、第八条2又は前条の規定

い場合には、大韓民国の法令は、適用しない。 定により日本国の法令の適用を受けるものに同伴する配偶者又は子が被用者又は自営業者として就労しな 強制加入に関しては、大韓民国の領域内において就労する者であって、第六条、第八条2又は前条の規

第十一条

両締約国の権限のある当局は、

- (a) この協定の実施のために必要な行政上の措置について合意することができる。
- (b) この協定の実施のために連絡機関を指定する

置政必のこ 等上要実施 の 措行に定

速やかに相互に通報する。 自国の法令の変更 (この協定の実施に影響を及ぼすものに限る。)に関するすべての情報をできる限り

第十二条

相互援助

援助を相互に提供する。この援助は、両締約国の権限のある当局又は実施機関の間の相互の同意により別段 両締約国の権限のある当局又は実施機関は、それぞれの権限の範囲内で、この協定の実施のために必要な

の決定が行われる場合を除くほか、無償で行う。

七三八

10 Kł

조제2항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범령을 적용 받는 자에 수반하 는 배우자 또는 자녀가 일본국민이 아닌 자일 경우에는 당해 배우자 또는 자녀가 본국의 법령에 따라 결정한다. 당해 배우자 또는 자녀가 일본국민일 별도의 신고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국의 법령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또한, 1. 강제가입에 관하여는 일본국의 정우에는 일본국의 법령 적용의 면제는 일 영역 안에서 근로하는 자로서, 제6조ㆍ제8

8조제2항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의 법령을 적용 받는 자에 수반하는 배우자 또는 자녀가 피용자 또는 자영자로서 근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강제가입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근로하는 자로서, 제6조ㆍ제

1 KH

-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 가. 이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 조치에 대하여 합의할 수

. 무였

- 나. 이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연락기관을 시정한다
- 다. 자국 법령의 변경(이 협정의 실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를 가능한 한 신속히 상호 통보한다 <u></u> 夂 한한다)에 관한

12 KH

이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상호 제공한다. 그러한 원조는 양 체약당 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간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별도의 결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상으로 한다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각자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規則に従って他方の締約国の権限のある当局又は実施機関に伝達する。 る情報 (この協定の適用のために必要なものに限る。)を当該一方の締約国の法令その他関連する法律及び1 一方の締約国の権限のある当局又は実施機関は、当該一方の締約国の法令の下で収集された個人に関す

適用する目的のためにのみ使用する。の規定に従って伝達された個人に関するいかなる情報も秘密として取り扱うものとし、かつ、この協定を2 一方の締約国の法令その他関連する法律及び規則により開示が義務付けられている場合を除くほか、1

第十四条

合には、当該他方の締約国の言語による翻訳を添付することに努める。 理人に対して、各々の自国の言語により連絡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一方の締約国による強制執行に理人に対して、各々の自国の言語により連絡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一方の締約国による強制執行に1 この協定の実施に際して、両締約国の権限のある当局又は実施機関は、相互に、及び関係者又はその代

されていることを理由として申請書その他の文書の受理を拒否してはならない。 2 この協定の実施に際して、一方の締約国の権限のある当局又は実施機関は、他方の締約国の言語で作成

第十五条

この協定の解釈又は適用についての意見の相違は、両締約国間の協議により解決する。

제 13 조

1. 일방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당해 일방체약당사국 법령에 의하여 수십된 개인에 관한 정보(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것에 한한다)를 당해 일방체약당사국 법령과 그 밖의 관련된 법률 및 규칙에 따라 타 방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전달한다.

2. 일방체약당사국 법령과 그 밖의 관련 법률 및 규칙에 따라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달된 개인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비밀로서 취급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이 협정을 적용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제 14 조

1. 이 협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상호간 또는 관계자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각각 자국의 언어로 연락할 수있다. 다만, 일방체약당사국에 의한 강체집행에 직접 결부될 수 있는 문서를 타방체약당사국 영역 안에 통상 거주하는 관계자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송부할 경우에는 당해 타방체약당사국의 언어에 의한 번역을 첨부하도록 노력한다.

 이 협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일방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 관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언어로 작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신청서 그 밖의 문 서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5 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있어서의 의견 상위는 양 체약당사국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起算	期間	前の	の効力発	の協
		なす。	前に関	第六

当該派遣又は自営活動の期間は、この協定の効力発生の日に開始したものとみ

これらの規定にいう派遣又は自営活動をこの協定の効力発生

前に開始した者については、当該派遣又は自営第六条1又は3の規定の適用に当たっては、

第十七条

効力発生

に通告する外交上の公文を交換した月の後三箇月目の月の初日に効力を生ずる。この協定は、両締約国が、この協定の効力発生に必要なそれぞれの国内法上の要件が満たされた旨を相互

第十八条

及び終了 有効期間

れた月の後十二箇月目の月の末日まで効力を有する。対し書面によりこの協定の終了の通告を行う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は、この協定は、終了の通告が行わ立の協定は、無期限に効力を有する。ただし、いずれの締約国も、外交上の経路を通じて他方の締約国に

以上の証拠として、下名は、各自の政府から正当に委任を受けてこの協定に署名した。

末

文

二千四年二月十七日にソウルで、ひとしく正文である日本語及び韓国語により本書二通を作成した。

日本国のために

高野紀元

大韓民国のために

제 16 조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에서 말하는 파견또는 동조제3항에서 말하는 자영활동이 이 협정의 발효 전에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파견 또는 지영활동 기간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시된 것으로 본다.

제 17 소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각의 국내법상의 요건 충족되었다는 취지를 상호 통고하는 외교상의 공문을 교환한 달의 다음 달부 세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한다.

亚 으

제 18 조

이 협정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어느 일방체약당사국도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의 통고를 할 수 있 다. 이 경우에는 이 협정은 종료의 통고가 이루어진 털의 다음 털부터 열두 번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4년 2월 17일에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일본어 및 한국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일본국을 위하여

疟

野 紀 元

대한민국을 위하여

반 기 문

とを定めたものである。とを定めたものである。両国の年金制度への強制加入に関する法令の適用の調整を行うこ度への二重加入を回避するため、両国の年金制度への強制加入に関する法令の適用の調整を行うこの協定は、我が国と韓国との間で、両国間の人的交流に伴って発生する両国の公的年金保険制(参考)